

2026년 구리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구리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일반행정)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간	담당직무
일반행정 (의회사무과)	지방한시임기제 9호(대체인력)	1명	임용일로부터 1년(예정)	· 의회 일반행정 업무 ·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휴직자의 복직 시기 및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장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 근무함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직급)	자격요건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사무운영, 회계관리 를 수행한 경력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 인정대상 및 증빙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법인·단체)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으로서 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직무내용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시간선택제임기제)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후 인정
※ (예시) 주 20시간 근무 경력 4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여 2년으로 인정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1일 7시간(09:00~17:00), 주 5일 근무(주 35시간)
※ 근무환경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휴직자의 복직 시기 및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장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의4에 따른 봉급월액을 적용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봉급액 기준 (주40시간)	환산 봉급액 (주35시간)	비 고
지방한시임기제 9호	2,346,300원	2,053,010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 (수당)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유의
- (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 적용
 - ※ 「공무원연금법」 (2018. 09. 21. 字 시행) 적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8.(금) ~ 9. 30.(수)	2026. 9. 28.(월) ~ 9. 30.(수)	2026. 10. 8.(목) 예 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2026. 10. 15.(목) ~ 10. 16.(금) 중 (추후 홈페이지 공고)	2026. 10. 22(목) 예 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정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개별확인

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결과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09:00~11:30, 13:00~18:00) [3일간]
- 응시수수료 : (8·9급 상당)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 > (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 : 구리시 수입증지(구리시청 1층 민원실)를 응시원서에 소인(부착) 후 제출
- 우편접수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우편통상환(우체국)을 동봉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우편접수 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등기우편 발송(서류 및 수수료 분실, 누락 등 방지)
 - ※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의회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 우편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수장소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1층)
- 우편주소 : (11954)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의회 1층 의회사무과 채용담당자

< 원서접수 유의사항 >

- 수입증지 미부착 시 접수불가
- 응시수수료 반환하지 않음.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반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양면인쇄 금지>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제1호 서식
2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8·9급 상당) 구리시 수입인지 5,000원 - (방문접수) 구리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수입인지 구입 후 부착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제2호 서식 (필수)
3	☐ 이력서 1부 - <u>경력증명서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절대 기재 금지(증빙자료 미첨부 시 불인정)</u>	제3호 서식 (필수)
4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내외	제4호 서식 (필수)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2매 내외	제5호 서식 (필수)

연번	서류 항목	비고
6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가능하며, 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제6호 서식 (필수)
7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유의 ※ 재직 사실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수기 기재) -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응시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서식 제7호> 경력증명서 양식을 추가 제출 -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을 제출 ※ '폐업사실 증명서' 또는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필수로 제출 - 주 40시간 전임 근무가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관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7호 서식 (필수)
8	☐ 채용 분야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 시)	
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 확인 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수
10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필수
11	☐ 주민등록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필수
12	☐ 그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해당 시)	
1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및 본인의견서 1부(자필서명 필수)	제8호 서식 (필수)
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필수)	제9호 서식 (필수)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 에 한함.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의 수령자의 경우 합격 시 연금 중단 등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면접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용관련 문의 :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031-550-2517)